#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51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장종태・박정현・남인순

박홍배 • 이건태 • 박용갑

이재관 • 이연희 • 조승래

송재봉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

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 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를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으로,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 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종전의 제9항) 중 "정보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

에만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⑤ 검사가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로 법원에 그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3조의5(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제한 등)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용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6(국회의 통제)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지유예 통보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대행기관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국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제5항제13호 중 "제83조제5항"을 "제8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83조제7항"을 "제83조제9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 ③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 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 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 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따를 수 있다. <단서 다만, 제2호의 자료는 다른 방 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 신설> 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 • 보전 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람 또는

1. ~ 6.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지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의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⑤ 검사가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외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수 있다.
-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1121011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
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허가를 신청하
고, 검사는 정보제공요청 허가
청구서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
구할 수 있다.
<u>⑦</u> <u>제3항</u>
<u>8</u>
<u>제7항</u>
<u> </u>

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생략)
-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 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7항
<u>.</u>
 <u>⑩</u> (현행 제8항과 같음)
<u>(1)</u>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
,
·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⑧ (생 략) <u><신 설></u> \_\_\_\_\_\_

----.

- 1. ~ 3. (현행과 같음)
- 4.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 용기간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3조의5(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제한 등)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이 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용 목적이 달 성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이용 자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신 설>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④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의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6(국회의 통제)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경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통지유예 통보 현황 및 내역에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 12. (생략)
- 13. <u>제83조제5항</u>을 위반하여 관 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 추어 둔 자
-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 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 17. (생략)

⑥ (생략)

<u>.</u>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83조제7항</u>
14. <u>제83조제9항</u>
15.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